

- 공설묘지 및 화장장의 설치·관리하는 사무는 자치단체 고유사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따라서 고성군 동해면에 새로이 설치하는 공설묘지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
- 다만, 장묘 시설사용료 및 관리비 등이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합당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,
- 또한 전반적인 내용, 체계, 형식 및 자구 등이 입법형식상의 제 기준에 적합하게 입안되었는지에 대하여도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안 제18조에 의한 장묘 시설의 관리 운영권을 위탁하고자 할 때 수탁자가 없을 경우의 대책은
- 답 : 그 시설에서 가까운 마을에 위탁할 것이며,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임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1. 12. 1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